3. 금융투자협회 규정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)
나.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(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, 적용기한 폐지 등의 개선사항 반영)
다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투자의향 점검제도 도입 등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0/12/28 개정 · 2021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경우에도 증권사별 대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영업규정 시행세칙상 서식 개정하기 위함

— 「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」 개정(2020.10.21. 개정, 202시행)

• 기준금리 현황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매월 공시

2) 주요 내용

□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

— (공시서식) 〈별지 제52호〉 '신용공여 이자율 현황' 중 「2. 예탁증권담보융자」 '(2)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' 신설

나.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(2020/12/29 개정 · 2021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2020.1국회 의결)에 따른 지침 정비

— 중개형 ISA 도입 및 주식 편입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이후 시행예정으로 관련 사항 추가 개정 예정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, 적용기한 폐지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반영

기존	개정
◆ 가입대상 • 근로·사업소득자, 농어민 •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	◆ 가입대상 조정 •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(단, 15세 이상은 근로소득 있는 경우) •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◆ 적용기한: 2021.12.31.까지 가입분	◆ 적용기한: 삭제
◆ 만기(의무가입기간) • 5년(3~5년)	◆ 만기(의무가입기간) • 3년 이상 * 만기 연장 가능
◆ 납입한도 • 연 2천만 원 • 최대 1억 원	◆ 납입한도 이월 허용 • 1~4년차: (2×n)천만 원 • 5년차 이후: 1억 원

□ 가입요건 변경 등에 따른 통계 공시 서식 개정 등

3) 관련 실무지침 개정

□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(2020/12/29 개정 · 2021/1/1 시행) 동일내용 개정

다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2020/12/15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위의 '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'(2020.6.16.)에 따라 중개업체의 펀딩과 관련하여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(발행기업 중요사항)을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의향점검제도 도입

— (개요) 펀딩 진행 전 기업 ·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수요 예측을 위하여 중개업체가 온라인으로 모의 투자의사 파악

— (주요내용)

-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증권의 청약 기간 이전에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 가능
- 증권의 발행 희망 가격을 제시(단일가격 또는 범위)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의 청약 의사를 수렴
- 제도 시행의 안내와 관련하여 중개업체 및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, 인터넷 포탈 사용 허용
- 다른 방식(예: 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방식)을 활용한 수요 파악도 허용

— (규제사항)

- 투자의향 점검결과 및 과정의 공개, 홍보 목적 활용 금지
- 투자의향 점검을 위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
- 협회의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상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은 가능

□ 투자자 정보제공(발행기업 중요사항) 확대

— (개요) 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발행기업의 존속,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· 체계화

- 중요사항: 유상증자, 상장, 합병, 영업 양수도, 부도, 폐업, 대표자 변경 등

— (주요내용)

- 중개업체는 발행기업이 중요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절한 공간 제공
- 중개업체는 중개업체-발행기업 간 중개계약 체결 시 발행인의 중요사항 공지의무를 계약에 포함하고 이를 발행인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